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김 소 양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.

-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,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

한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.

-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,
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
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